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3. 2. 19

1. 청구단체	단체명	참여연대		
	소재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통인동)		
	대표자	정현백 외		
	단체설립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권력유착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연대 정관 2조 설립목적)		
	허가·신고·등록기관	행정안전부		
	회원 의 수	13,000여 명	조직 년 월일	1994. 9. 10
	연락전화 등	전화	(02)723-5302	FAX
2.	감사대상기관	헌법재판소 등 12개 기관		
3.	감사청구 제목 : 특수업무경비 사용 관리 실태 감사			
4. 감사청구사항	별지 기재			
5. 청구이유	별지 기재			
6. 기타	단체 등록중			
7. 관련증거자료	증 제1호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회의록(3차) 중 해당 부분(1~10쪽) 증 제2호 2006. 6 기획예산처 발간 「2006년도 세출예산지침」 중 해당 부분(68~69쪽) 증 제3호 2012. 1 기획재정부 발간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해당 부분(177~178쪽) 증 제4호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자료 증 제5호 해당 언론기사 증 제6호 2012. 8.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중 해당 부분 제7호 증 2008. 9. 22. 국민권익위 재결례			



감사 청구 대상

총 12개 기관

1. 2012.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 운영 문제에 대해 지적한 6개 기관
(특임장관실/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국세청/소방방재청)
2. 언론을 통해 특정업무경비 집행 의혹이 제기된 6개 기관
(국회/대법원/검찰청/경찰청/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감사 청구 제목

특정업무경비 사용 관리 실태

감사 청구 이유

1. 감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2013년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혜영 법원사무관은, 이동흡 전 후보자 재직 기간인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월 300~500만원에 달하는 3억2천만 여 원을 특정업무경비로서 수표 지급하였는데, 월 30만원 이상은 일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서류는 받지 않았으며 월별 사용내역서는 수령 보관하고 있지만 별다른 확인 관리 없이 자신의 캐비닛 한 쪽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증 제1호 참조).

나. 문제가 된 이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

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¹⁾로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이 단지 이 전 후보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사로이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증빙서류도 갖추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허술히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크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감사청구의 이유

가. 관련 지침

지난 2006. 6. 부터 당시 기획예산처는 <2006년도 세출예산지침> 중 특정업무경비 사용 지침(증 제2호 참조)을 각 기관에 하달하였고, 이후 이 지침은 2007년부터 연간 월 개인 정액지급 상한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바뀐 점 이외에는 거의 그 내용이 바뀌지 않은 채 매년 각 기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12. 1.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지침(증 제3호 참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 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 ①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 ②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매월

1) 기획재정부 <201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177p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특정 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 ③ 정무직 및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고,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 ④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이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할 것

등의 상세한 집행계획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 각 중앙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의 예산 집행의 자율성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그 의미가 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관한 각 기관별 문제 사례 또는 문제의심 사례

- (1) 기획재정부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정보공개(중 제4호 참조)한 자료에 의하면,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2010년 6천40억 원, 2011년 6천284억 원, 2012년 6천473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역시 51개 기관에 6천

524억 원이 배당하였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급 기관의 절반 정도는 이 예산을 정액 지급하여 이는 전체 특정업무경비의 87%에 이른다고 합니다(증 제5호 참조). 2011년의 기준으로 보면 5천 481억 여 원이 마치 수당과 같은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액 지급된 액수가 대상 인원에게 갔는지, 또 지침으로 허용된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위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많은 위법사항이 있으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2) 이에 참여연대는 2012. 8.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제6호 증 참조)과 여러 언론 기사를 분석한 후, 아래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처리 행태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사청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정업무경비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각 기관의 문제점은

- ① 특임장관실은 정무직과 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월 정액과 실 지급액으로 나누어 매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여 그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현안 조사업무가 상시 조사업무에 포함될 여지 존재,
- ②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를 과다 편성하여 예산을 불용,
- ③ 감사원²⁾은 정무직인 감사위원 6인에 대하여 매월 50만원씩 특정업무

2) 귀 원의 문제 사례의 경우, 더욱 철저히 내부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로 심의활동비를 지급하여 집행지침을 위반,

- ④ 헌법재판소는 특정분야 업무와 무관한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 ⑤ 국세청은 특정업무경비를 이용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 과목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유지 및 보수예산은 일반예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⑥ 소방방재청은 특정업무경비를 특정부서·직렬·직급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등입니다.

또한 여러 언론(제5호 증 참조)의 보도 내용을 보면

- ⑦ 국회의 경우, 특정업무경비는 의원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국회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이 상임위 비용을 관리하여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특정업무경비라는 이름 자체를 모른다고 하며,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여러 세목(細目)으로 쪼개 지급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특정업무경비'라는 이름 자체를 모를 수 있다"고 밝혀 엄격한 증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며, 한 상임위원장은 "특정업무경비"라는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임위 활동에 쓰라고 지급되는 게 월 500만~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안다"고 했으며 다른 상임위원장은 "유류비 등 다른 보조금이 한꺼번에 '경비 통장'에 입금돼서 거기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 ⑧ 대법원의 경우, "특정업무경비 자체를 모르는 판사도 많고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금지된 경조사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특경비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증빙 자료를 내게 돼 있지만 특경비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행정 편의상 사전에 지급되다 보니 100% 완전한 증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 ⑨ 대검찰청의 경우, 압수수색 등 단체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쓰기 위해 각 지검 부장급 검사 이하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주고 있으며, 부별로 매월 200만원 가량의 특정업무경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한 부장급 검사는 “받고 있는 돈이 특정경무경비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으며 대부분 부 운영비로 쓴다”고 하며,
- ⑩ 경찰청의 경우,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치안활동비로 지급하는 월 17만원을 특정업무경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치안활동비가 직무 특수성에 따라 주는 부가급여의 성격이 강한 만큼 공무원 수당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편법으로 적용한 것이라거나,
- ⑪ 행정안전부의 경우, 2010년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위원장에게 매월 8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였으며,
- ⑫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원들에게 매달 46만 2천원에서 55만 5천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 등의 문제점을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위반

가. 정액 지급 범위에 대한 지침 위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는 집행지침을 통해 30만원 이상의 금액은 증빙 및 지출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며, 그 이하라 할

지라도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액 지급을 하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은 이를 인지하면서도 이러한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은 행정부처에 적용될 뿐이라며, 그간 여러 차례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전혀 시정하지 않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바, 귀 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 사용 용도에 대한 지침 위반

또한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업무추진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 9. 22. “피신고자 A는 ○○장, 피신고자 B는 예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특정업무경비예산을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용도 등으로 집행하고, 월정액 지급기준(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구체적인 사용증빙을 갖추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 의혹” 사안에 대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여서는 안되며, 특정업무경비를 직책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및 연구지원비 등 당초 편성목적과 다르게 업무추진비 용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공기관에 재산손실을 가한 부패행위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결(제 7호 증 참조)을 행한 바 있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본 건인 각 기관들의 특정업무경비 처리 행태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침을 어기고 해당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엄정하게 감사하여 그 위법·부당성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상기 특정한 12개 기관 이외의 여타 다른 기관에서 부적정한 특정업무경비 사용 문제가 포착된다면, 본 감사 청구 대상에 구애받지 말고 전면적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방법

증 제1호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회의록(3차) 중 해당 부분(1~10쪽)

증 제2호 2006. 6 기획예산처 발간

「2006년도 세출예산지침」 중 해당 부분(68~69쪽)

증 제3호 2012. 1 기획재정부 발간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해당 부분(177~178쪽)

증 제4호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자료

증 제5호 해당 언론기사

증 제6호 2012. 8.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중 해당 부분

증 제7호 증 2008. 9. 22. 국민권익위 재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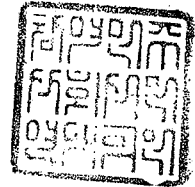
첨부 서류

1. 참여연대 비영리단체 등록증 1부
2. 위 증거 방법 각 1부

2013. 2. 19

참여연대 (인)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감사원장 귀하

제 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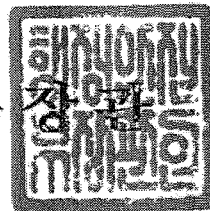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 단체명칭 : 참여연대
2.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3. 대표자
 - 성명 : 정 현 백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엄미골로80 (심곡동)
4. 주된사업
 - 참여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연구 및 감시활동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대표자)등록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



* 신규등록일: 2000. 7. 1

중 제1호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회의록(3차) 중 해당 부분(1~10쪽)

제312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검하는헌법재판소장 (이동흡)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1월22일(화)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 1.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검하는 헌법재판소장(이동흡)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심사된 안건

- 1.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검하는 헌법재판소장(이동흡)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기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검하는 헌법재판소장(이동흡)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위원장 강기정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검하는 헌법재판소장(이동흡)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참고인 증언과 진술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분들의 출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증인·참고인 여덟 분을 요청했습니다. 다마는 오늘은 증인 한 분과 참고인 네 분, 다섯 분만 출석했습니다.

증인 박해빈 증인은 재판 일정 이유로 불출석, 참고인 길원옥 참고인은 고령으로 거동 불편 이유로, 참고인 김국현 참고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원 확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영 증인.

○증인 김혜영 예.

○위원장 강기정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형준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권형준 예.

○위원장 강기정 예, 감사합니다.

김문현 참고인.

○참고인 김문현 예.

○위원장 강기정 심경수 참고인 오셨습니까?

○참고인 심경수 예.

○위원장 강기정 예, 감사합니다.

한상권 참고인.

○참고인 한상권 예.

○위원장 강기정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십시오.

○증인 김혜영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검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김혜영

○위원장 강기정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여야 간사 합의대로 2시간 범위 내에서 교섭단체 시간총량제로 새누리당에 60분, 민주통합당에 50분, 비교섭단체에 10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증인과 참고인을 지명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지금부터 12시까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선생님 여러분들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통합당의 박범계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김혜영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공채로 들어가셨지요, 물론?

○증인 김혜영 예, 7급 시험 보고 들어왔습니다.

○박범계 위원 특채 아니시지요?

○증인 김혜영 공채입니다.

○박범계 위원 7급에서 지금 5급으로 승진을 하셔서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경리계, 경리 담당하시지요?

○증인 김혜영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2009년부터 2010년, 2년 동안 경리 담당을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시구나. 이동흡 후보자가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 퇴임 시까지 그 기간 중에 경리 지출업무 담당하신 분 맞으시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헌법재판소에 국제협력과라는 부서가 있지요?

○증인 김혜영 예,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대체로 재판관님들께서 해외출장 가실 때 출장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견적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또 일정을 영어로 얘기하면 조율하고 어레인지(arrange)하는 이런 것은 국제협력과에서 담당하지요?

○증인 김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리고 연구관 중에…… 연구관들이 한 70여 분 되십니까?

○증인 김혜영 예, 그 정도 되십니다.

○박범계 위원 연구관 중에 국제업무 담당 연구관이라고 있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재판관에 전속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증인 김혜영 예, 전속되지지는 않으셨습니다.

○박범계 위원 국제협력과에 담당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증인 김혜영 글썄……

○박범계 위원 잘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모르는 대로……

○증인 김혜영 한 일고여덟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겠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국제업무 담당하는 연구관과 국제협력과의 담당 직원은 상호간에 당연히 업무의 성격상 서로 잘 소통을 하겠지요, 업무에 관해서?

○증인 김혜영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국제협력과에서 국제업무 담당하는 연구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재판관의 해외출장 일정이 나오고 그 일정에 맞는 비용견적이 나오고 출장계획서가 나오고,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경리관에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겁니까?

○증인 김혜영 예, 그쪽 관서장이 사인을 하셔서 가지고 저희 경리계로 송부를 하면 경리계에서는 실질적인 지출업무만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범계 위원 집행을 하시는 거지요?

헌법재판관님들은 소위 말해서 봉급과 수당이 라는, 전체적으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시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그 수당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월정직책급도 수당의 일종으로 합법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거지요?

○증인 김혜영 월정직책급은 수당은 아니고요, 그것은 4급 이상 공무원 누구에게나 직책에 따른 어떤 업무수행경비입니다. 그래서 봉급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까?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업무수행경비입니까?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그것도 일종의 그러면 업무추진비 비슷한 성격입니까?
 ○증인 김혜영 그것은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박범계 위원 그러면 재판관님들께서 개인적으로 그것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목입니까?
 ○증인 김혜영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구면요.
 특정업무경비라고 잘 아시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제가 빠르게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 44조와 70조 등에 의해서 기재부에 위임된 예산 및 기금운용에 관한 집행지침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혜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특정한 업무하고 관련되고, 특정한 업무라는 것은 수사, 조사 또 재판을 위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특정 업무들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로도 전용할 수 없는 것이고, 굉장히 엄격하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그리고 반드시 증빙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이것은 당연히 급여가 아니지요?
 ○증인 김혜영 예, 아닙니다.
 ○박범계 위원 따라서 이 용도 외의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증빙도 당연히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30만 원 이내의 정액, 즉 경상비로서 누가 봐도 이것은 확실히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범위 내에 들어갈 것 같은 것들은 뭐 증빙이 필요 없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그리고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대단히 말 그대로 예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요?
 대답……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맞지요? 이동흡 후보자께서는 신한은행 안국동지점, 즉 헌법재판소 바로 옆 골목에 위치한 곳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은 다 이용하시고, 헌법재판소의 주거래 지점이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여기에 A계좌와 B계좌를 개설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A계좌에는 봉급과 채수당이 들어갔고 B계좌에는 아까 제가 여쭙 본 월정직책급이 들어갔는데, 왜 월정직책급은 따로 여기에 지급을 하셨습니까? 직접 넣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타 가지고 여기다 입금했습니까?
 ○증인 김혜영 월정직책급은, 처음에 오시면 누구든지 자기 명의로 된 계좌면 어떤 것이나 저희는 다 수용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원해서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구면요?
 ○증인 김혜영 그렇지요.
 ○박범계 위원 특이하네요. 봉급통장이 아닌 그것은 개인계좌인데 그러로 달라고 원하셨구면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2006년 9월부터, 재판관이 시작될 때부터 퇴임하는 2012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어제 확인된 3억 2000만 원이라는 특정업무경비가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재판관후보께서, 재판장후보께서는 뭐 재판관후보이시기도 합니다마는 뭐라 그러셨나 하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수표로 타 가지고 이것을 즉시 안국동지점에 입금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렇게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요?
 ○증인 김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감사합니다.
 그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와 관계없이 개인계좌에 들어가는 이상 그 개인계좌에 들어오는 개인 돈과 섞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집 간장과 남한테 빌

려 온 간장을 섞어 가지고 그중 간장의 일부를 퍼서 쓸 때 그 섞인 간장 중에 내 간장을 썼다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개인계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중빙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썼느냐를 떠나서. 맞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자, 그런데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이번 청문을 위해서 요구한, 이동흡 후보자의 정상적인 급여 총액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6년간 6억 9821만 원, 맞습니까?

○증인 김혜영 예,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맞습니다. 편하게 그냥 말씀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시지요. 저희 PPT를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소득 내역이 이렇습니다. 6억 9821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가 주장하는 재임기간 중에 특정한 수입, 즉 조의금을 자기 계좌에 입금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또 상속재산 처분금, 미신고 보험 증가분은 1억 원으로 굳이 인정을 해 드린다 하더라도 재임 기간 중의 총수입은 사모님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8억 원 가깝습니다.

자, 세 번째 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월급, 봉급자들은 다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신용카드공제액이 나오지요?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내역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 공제액에 기초해 가지고 국세청이, 이 사람이 총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추산 공식이 있습니다. 급여액×0.25+신용카드 소득공제액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금액하고 이 부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 나타나는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을 다 합치니까 2억 8300만 원입니다. 이것이 6년간에 이분이 가장 최소의, 상식적이지 않은 최소의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월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봉급자의 3.37, 평균가구원 3.37의 도시가구의 월 평균 소비액은 568만 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대충 한 700~800만 원 받는 고액의 월급소득자가 대충 한 달에 애들 교육비 쓰고 식비 쓰고 하면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예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추산한 6년간의 생활비는 적어도 4억 원 가깝습니다.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3억 9000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최소생활비 2억 8300만 원으로 일단 지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이분은 두 번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정말 최소 20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후보자 및 배우자의 사적 해외여행비, 재임기간 중 부부 합산 무려 스물네 차례의 해외여행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한 번 나갈 때 한 100만 원 정도 쳐 가지고 3000만 원을 최소로 잡았습니다.

미국, 유럽 가는 데 100만 원 듬니까? 한 사람 당 500만 원 이상 들지요. 그런데 100만 원 정도로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딸이 미국에 유학을 2.5년 그리고 최종 체류 3년 있다가 옵니다. 본인이 보내줬다는 송금액 4300만 원입니다. 제가 유학원에 물어보니까 유학경비 최소 1억 5000에서 1억 7000만 원 든답니다. 그중에 그냥 4300만 원만 인정을 했습니다.

재임기간 중에 그랜저로 승용차를 바꿨습니다. 3200만 원 지출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이 6년 동안의 재임기간 중에 이분과 배우자의 순예금 증가액, 현재 가지고 있는 순예금 증가액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다 합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로 잡은, 그러나 상식적이지 않은 이분의 최대로 잡은 수입에서 남아 있는 예금과 이러한 지출액을 더 하니까 마이너스 1억 8000만 원이 나옵니다. 통계청 자료에 기초하면 2억 8679만 원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아까 비유를 했던 남의 집 간장과 제 집 간장을 한 간장독에 집어넣었을 때 그 간장을 썼을 때 이것은 내 집 간장을 쓴 것이고 남의 집 간장은 쓴 것이 아니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근거입니다.

즉, 혼재되어 있는 B계좌에 들어가 있는 이 특정업무경비가, 일부는 제가 어제 밝혔습니다마는

일부는 개인적인 보험료, 해외송금, 개인적인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쓰여지고 일부는 그것이 예금으로 남아 있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추산액이 비교적 합리적인 설득이 있습니까?

○증인 김혜영 일단 저희가 보수 드린 것은 약 7억 그것은 맞고요.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직책급 한 1억 그래서 저희가 급여성으로 한 8억 지급한 것은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월정직책급……

말씀하십시오.

○증인 김혜영 저희는 급여 7억하고요, 물론 자세히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6억9821만 원 또 월정직책급 1억, 그러니까 8813만 원 해서 약 7억 8634만 원인데 대략 8억이라고 저희가 지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재산증식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분은 어제 저희들이 청문회를 할 때 오전에는 '특정업무경비 사용과 관련되어서 헌법재판소사무처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규정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오후에 들어서 '그 지침과 규정대로 사용했다. 증빙내역이 사무처에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전체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특정업무경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계좌에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용과 관련해서 증빙내역을 이분이 헌법재판소사무처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혜영 저희는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비서실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서 일단 그냥 보관만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범계 위원 이동흡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증빙을 비서관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한 것으로 안다?

○증인 김혜영 제가 경리계장으로 있는 2년 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보관을 했습니까?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그것을 왜 제출하지 않으시지요?

○증인 김혜영 경리계장으로서 제가 그렇게 결단력 있게 하지는 못했구요.

그것을 일단 재판활동비 이런 걸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것을 그냥 공개하지 않고 제 캐비닛 한쪽에 보관만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과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의 지침상 증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증빙을 갖추었는지 그것이 타당한지 누가 그것을 검증합니까?

○증인 김혜영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것이 김혜영 주무관의 책임 영역과 권한 영역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왜 그것을 결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현재의 수장과 지휘부 지도부의 결정입니까?

○증인 김혜영 그것은 일단은 실무담당자로서 제가 결정을 했고요. 그것을 왜 수용하느냐 뭐 그것은 차후고요, 일단은 제가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김혜영 주무관계서……

○증인 김혜영 죄송하지만 저는 사무관입니다.

○박범계 위원 주무관이라는 말은 일종의 준법률적 용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무, 경리를 담당하는 주무 사무관을 제가 줄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직급은 사무관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무관님.

다른 경리담당 사무관이 계실 때 그러면 그분도 이러한 증빙을 비서관이든 본인으로부터 징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혜영 일단은 제가 인수인계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박범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김혜영 사무관 본인이 경리관으로서 책임하는 그 기간 바깥에, 다른 기간에 있는 것들도 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증인 김혜영 저는 그것은 후임한테는 확실히 확인을 못 했구요. 그렇지만 그러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혜영 예.

○**박범계 위원**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은 아니네요?

○**증인 김혜영**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냥 쌓아 놔는데 제가 선임이라고 가서 확인하고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저도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건드리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열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것들입니까?

○**증인 김혜영**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박범계 위원** 왜 보기가 두렵습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 헌법재판소의 경리를 담당하는 경리계장 김혜영 사무관이 왜 그것을 보기를 두려워 할 정도로 이것이 그렇게 민감하고 무서운 것입니까?

○**증인 김혜영** 그것은 특정업무경비 자체의 성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 경리관으로서 아까 헌법재판관이 해외에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출장계획서와 견적서와 그러한 계획들이 국제협력과에서 만들어져서 넘겨서 집행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운임증명서를 PPT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2008년 12월에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을 방문하고 나머지 시간을 연구관은 국내로 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멕시코 칸쿤을 갔다 온 그 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곳을 간 비행기 표입니다.

저는 어제 헌법재판연구원 출신의 인사로부터 들은 제보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해서 이것은 매우 신빙성 높은 진술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서영교 위원이 후보자에게 이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가는 이 비행기 티켓, 사모님이 어떻게 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일리지로, 원래 이코노미 좌석인데 마일리지로, 적립된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비즈니스로 후보자와 함께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마일리지와 사모님의 마일리지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운임증명서, 대한항공에서 보내 온 것입니다. 이것 비고란 봐 주십시오.

‘11월 발권 기준 운임입니다. 현재 배우자분 예약은 업그레이드 좌석이—마일리지로 하는 업그레이드 좌석이—왕복 구간 다 만석입니다’, 즉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고객들이 이미 다 찾았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기예약을 원하시면 전화 연락 부탁드립니다. 현재 프레스티지(prestige)를, 즉 비즈니스입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강기정** 1분만 더 드리고 마저 마치십시오.

○**박범계 위원** 예.

‘현재 프레스티지—즉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클래스로 두 분 예약해 드렸습니다’……

자, 후보자는 마일리지로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이코노미를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 차액분은 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후보자의 진술에서 명확히 나왔습니다.

후보자는 그 당시 1등석, 즉 장관들이 이용하는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차액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김혜영 사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혜영** 죄송한데요, 제가 경리계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서에서 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서장까지 도장을 받고 오는 것에 대해서 특히 국제 쪽은요, 저희 은행 마감시간도 4시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세세히 보면서 하지는 않았습시다. 그쪽에서 다……

○**박범계 위원** 사후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증인 김혜영** 예, 그쪽에서 다 책임지고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은행을 통해서 국고에서 입금만 시켰지 그것이 비즈니스석이나……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기정** 김혜영 증인에게 제가 한번, 한 가지 불분명해서요. 아까 무엇의 결정을 본인이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무엇을 결정하셨다는 겁니까?

○**증인 김혜영** 아까 말씀드린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확인서 그것을 누군가가 요구하거나 그러면 그냥 공개해도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 스스로 이것은 기관…… 공개하기 좀 어려

운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제가 조언을 구한 것은 아니고요, 저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기정 아, 그것을 결정하셨다?

그러면 증빙서류를 공식 보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캐비닛에 넣어 두니까?

○증인 김혜영 저희가 현금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는 수령인으로 했고요, 그 세세하게 쓰신 내역서는 별도로 보관을 한 겁니다.

○위원장 강기정 그러니까 정산하고 정리해서 캐비닛에 보관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증인 김혜영 예, 비서실에서 준 것을 그냥 보관해 뒀습니다.

○위원장 강기정 그러니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쭙 볼게요.

2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이동흡 재판관이 낸 증빙서류는 몇 건 정도 된다고 봅니까?

○증인 김혜영 저희 매달 1건씩 받았습시다.

○위원장 강기정 매달 1건?

○증인 김혜영 예.

○위원장 강기정 예를 들면 300~500을 준 것에 대한 1건?

○증인 김혜영 예.

○위원장 강기정 그러면 그것은 특정업무경비 지침에 위반되잖아요?

○증인 김혜영 예, 위반되겠지요.

○위원장 강기정 아니, 그러니까 현금 30만 원까지만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한 400~500을 매달 주고 그것을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혜영 예.

○위원장 강기정 그것 위반 아닙니까?

○증인 김혜영 그것 위반인 것 알면서도 했습니다.

○권성동 위원 우리도……

○위원장 강기정 예, 그러시지요.

다음은 새누리당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우리 김 사무관, 어쨌든 이 중요한 자리에 오셔서 가지고 차분하게 답변을 잘하고 계시는데 경리계장 위에 경리과장이 계신가요? 어떻게 되지요, 그 부서의?

○증인 김혜영 총무과장님 계십니다.

○김재경 위원 주무과장……

○증인 김혜영 아니, 총무과장님이 계십니다.

○김재경 위원 총무과장?

○증인 김혜영 예.

○김재경 위원 그 위에는 이제 사무총장이 되는 건가요?

○증인 김혜영 그 위는 행정관리국장님 계시고요.

○김재경 위원 국장 있고 총장 있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우리가 봉급·수당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것 중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고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증인 김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별로, 증빙서류가 굳이 안 붙어도 되는 비목의 예산이고 업무추진비는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혜영 예.

○김재경 위원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는 예외가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증빙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익숙한 말은 판공비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 판공비라는 용어를 현재에서는 쓰니까, 안 쓰니까?

○증인 김혜영 지금 그 용어는 사라졌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면 이것을 뚜렷이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아까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네요?

○증인 김혜영 예.

○김재경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옛날에 쓰던 판공비라는 개념에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증인 김혜영 글썽요, 제가 판공비가 있던 시대의 공무원은 아니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국민들이……

○증인 김혜영 그래서 정확하게 판공비가 된지는 모르겠는데, 판공비가 이렇게 분화됐다는 얘기는 사실 공무원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김재경 위원 나도 잘은 모르지만 쓰는 사람에게 상당히 재량을 부여했던 이런 용도의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옛날의 개념을 갖다 설명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받아

서 보관을 한다…… 1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증인 김혜영** 꼭 1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1건으로? 한꺼번에?

○**증인 김혜영** 예,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한꺼번에 받았다?

그래서 보관을 했고, 이것은 다른 재판관 또 헌법소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인 김혜영** 그 방도 받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보관을 합니까?

○**증인 김혜영** 예.

○**김재경 위원** 옛날에는 어떻게 했대요? 전임자, 그러니까 증인의 전임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증인 김혜영** 전임자한테 배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후임자도 역시 그렇게 할 개연성이 높지요?

○**증인 김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증빙서류에 대해서 아마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고 이럴 때마다, 예산 심사할 때마다 ‘내놓아라’ 이런 요청들이 많았을 것이요, 오늘 청문회 전에도. 그런 경험 있지요?

○**증인 김혜영** 예, 그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는 조금 있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것은 법사위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 모든 상임위가 일부, 기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다 붙어 가거든요. 붙어 가면 항상 예산 심사를 할 때 이 내역을 내지 않으면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하겠다는, 그래서 실제로 일부 삭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이 증빙서류를 내라고 그랬고,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내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 최종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것을 낼지 안 낼지 결정 권한이?

○**증인 김혜영** 일단은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로는 직급이 다 있으니까, 공직사회니까……

○**김재경 위원** 아니, 의사 결정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주무계장으로서 내용을 잘 안이까 ‘이것은 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혹은 ‘이것은 줘도 됩니다’ 이런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의사 결정을 외부적으로 표현할 때는 누군가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혜영** 헌법재판소사무처는 사무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재경 위원** 그런데 왜 안 내는 것이예요? 주무관으로서 왜 안 내는 것이예요, 이것? 여야 가릴 것 없이 위원들이 이렇게 자꾸 이것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내는 것이예요?

○**증인 김혜영** 저는 그것이……

○**김재경 위원** 헌법재판소라는 게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준사법기관인데 거기에서 경리 처리를 하면서 이것을 못 주겠다고 할 때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김혜영**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못 주겠다고 하지는 못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재판 관련 된 그런 금액을 외부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이 담당자로서 할 일인가 생각하고 제출 못 했습니다.

○**김재경 위원** 아니, 증인의 소신에 따라서 국가 업무가 왔다갔다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본인이 의견을 낼라 그러면 그야말로 법률이라든지 업무 처리의 관행이라든지 내규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본인의 소신만 가지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혜영** 관행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관행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특별히 내규니 그런 것은 없고,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면 아까, 왜 지금 제출 안 한다 그랬어요?

○**증인 김혜영** 일단 관행도 있고요. 저 자신도 이것을 공개했을 때 과연 파급 효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정부 부처 어느 기관이 낱알이 공개를 한다면 저희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낱알이 공개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것은 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기관까지 연결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동흡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전후 재판관들의 특정업무경비 사

용내역을 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이동흡 후보자가 이 특정업무경비를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횡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사하게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신 분들이, 경리계장의 말씀대로라면 업무 처리는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자료들을 다 갖다 주면 저희들이 국회 차원에서 대법원, 감사원 역시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우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월정지급액 부분에서요, 아 월정직책급이 개인 계좌로 들어갔는데요. 그 급여계좌하고 다른 계좌로 두 개의 통장 중에 하나는 급여계좌이고 하나는 다른 계좌로 넣지 않습니까?

○증인 김혜영 예.

○강은희 위원 급여계좌에 같이 넣지 않고 다른 계좌로 분리해서 넣었다고 하셨지요?

○증인 김혜영 예.

○강은희 위원 월정직책급을 다른 재판관들도 그렇게 넣습니까, 아니면 급여계좌로 넣습니까?

○증인 김혜영 저희가 4급 이상 직원이 오시면 그것을 같이 넣고 싶으신 분은 같이 넣으시고, 원하는 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부분이 다른 재판관들은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하십니까?

○증인 김혜영 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면 통상적으로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경향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좌에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혜영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드릴 때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얘기는 해 드리기 때문에 아마 계좌나 또 일부는, 어떤 분들은 현금으로 하나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일단 개인계좌로 보관하는 것은 아까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개인계좌로 보관 안 하면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

○증인 김혜영 아니, 그것만 별도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모른다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모른다는 것이지……

○증인 김혜영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다른 계좌로 보관하든, 계좌로 보관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 사무관님, 수고하십니다.

김도읍 위원입니다.

우리 박범계 위원님께서 PPT를 이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

지금 30년 이상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이 공금 유용 혐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 오늘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을 박범계 위원님이 6억 9800 정도로 잡았는데 여기에 월정직책급이 소득에 들어가야 되지요?

○증인 김혜영 예.

○김도읍 위원 이게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벌써 이게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의금하고 입금 된 것 보면 1억 정도 되어서 9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득에 1억이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경리를 담당하시니까 전문성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오류 중의 하나가 국세청 신용카드 추산 공식에 따른 사용액, 통계청 자료 등 통계청 추산 생활비, 교육·의료비 이래 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으셨다 그러면서 2억 8000만 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장녀는 2006년부터 취업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리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녀는 2005년부터 외교통상부 홍보 2등서기관으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녀는 2005년부터 건축사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삼녀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 2년 4개월 정도 유학을 잤다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결국은 삼녀의, 그러니까 네 자녀 중에 세 딸의 교육비는 거의 들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비가 가장 큰 소비인데, 지금 이 기간 중에 2억 8000만 원이라는 소비를 추산을 했는데 여기에 교육

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교육비 든 것은 결국은 아들 한 사람이 학생이었는데 그것도 6년 중 2년은 군복무 기간으로 오롯이 빠집니다. 결국 아들 한 사람이 고등학교와 대학 잠시 다닌 이 학비인데 이것을 6년 동안 2억 8000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금 증가액 5억 7000만 원을 기준으로 두고 소득은 적게 잡고 소비는 추산 내지는 아이들, 자녀들이 취업해 있는 기간의 교육비를 과다 계상해서 이동흡 후보자가 마치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재산을 치부하는데 사용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흡 후보자가, 어제든 제가 또 독촉을 했지만 '후보자께서 이 특정업무경비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물론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고 경리관계서는 증빙자료를 다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잘못되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적어도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한 분을 공금 유용으로 몰아가려고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도 정확하게 추려 내고…… 어떻게 고소득자의 혈기 왕성한 사람들의 신용카드 사용액 추계를,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평생 공무원 생활 하고 부인과 함께 두 분에서 사시는 이분에 대해서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추산액을, 국세청 추산액을 계상해서 소비로 계산을 해 내는지, 이것은 너무 짜 맞추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개인 사생활 부분이지만 사무관계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혜영 그 부분은 제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천 위원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소득을 명백하게 과소 계상을 하고 소비는 지금 들지 않은 교육비를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비인데 교육비를 포함한 추계가 2억 8000입니다. 의료비, 두 분에서 큰 의료비가 든 것도 아닙니다. 교육·의료비 등 국세청 추계로 해 가지고 2억 8000을 잡았습니다.

이 소비를 너무 과다 계상을 하고 그래서 차액을 마치 특정업무경비로 유용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한 계산과 주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심경수 참고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참고인은 이동흡 후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후보자를 잘 알고 계셔야 참고인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를 어떻게 잘 알고 계신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심경수 저는 이동흡 후보자님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김성태 위원 잘 모릅니까?

○참고인 심경수 예, 소위 말하는 학연·지연·혈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헌법학회장을 맡으셨지요?

○참고인 심경수 예.

○김성태 위원 헌법학회장을 역임하셨는데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학계에서 바라보는 견해와 또 참고인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 심경수 저희 학계에서, 지금 제가 12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학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동흡 후보자가 지명 받았을 때 헌법교수들은, 지금 논의되는 사항은 알지를 못하니까요, 최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또 전에 조규광 소장님 계실 때 연구부장도 하셨고 해서 5기 소장님으로서 헌법 전문가가 이번에 임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기대 섞인 희망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해 온 이동흡 후보자를 헌법재판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인 심경수 아무래도 아홉 분의 재판관님들이 출신이 다 다르고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그 아홉 분의 재판관님들이 자기 출신에 대해서 거기에 얽매이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6년 동안 이분이 내리신 어떤 결정례를 보면 약간 보수 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으나 그게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성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형준 참고인, 2011년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할 때 위안부 피해자 배

증 제2호 2006. 6 기획예산처 발간
「2006년도 세출예산지침」 중 해당 부분(68~69쪽)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파견자 직급보조비와 월정 직책급의 병급이 가능한 경우는 4급 복수직 이하에 한한다.
- 각급기관에서 일시금으로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6-2. 특정업무경비(210-03목)

가. 일반지침

-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특정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일 때에는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정무직 및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세부지침

○ 개인별 월정액으로 편성된 경우

- 각 기관에서 특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직급별, 직책별로 매월 정액으로 지급토록 예산에 계상된 경비는 예산 내역대로 집행한다. 다만, 2006년 지급단가를 인상하였거나 항목이 신설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단위별 총액으로 편성된 경우

- 특정업무경비가 사업단위별 총액으로 계상된 기관은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만원 범위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증 제3호 2012. 1 기획재정부 발간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해당 부분
(177~178쪽)

- 조직관계법규상 비상근 기관장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 재외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파견자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의 병급이 가능한 경우는 4급 복수직 이하에 한한다.
- 각급 기관장은 직책수행경비를 일시금으로 월정액 지급시 개인의 보수 지급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5-2. 특정업무경비(250-03목)

가. 적용범위

-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세부지침

(1) 편성된 범위 내 집행원칙

- 특정업무경비는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마련 및 통보

-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집행투명성 제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정무직 및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이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5-3. 교수보직경비(250-04목)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2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9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교수들의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250-04목)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교수보직경비가 지급되는 자에게는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증 제4호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자료

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 [홈](#)
- [센터 소개](#)
- [공지사항](#)
-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
- [이화동 광장 |](#)
- [알권리 제도 |](#)
- [자유게시판 |](#)
- [지역로그](#)

탈 많은 특정업무경비. 올해 예산 늘린 기관은 어디?

오늘의정보공개청구/중앙정보 2013/02/12 11:46 Posted by opengirok

정부가 사용하는 돈 중에 특정업무경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얼마 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특정업무경비 유용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 후보는 특정업무에 사용하라고 주는 공금을 자기의 개인 계좌에 넣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관행을 따랐다면 다른 곳에서도 특정업무경비가 이처럼 개인의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트렌드 Daum 희망해



112 view on **손자와 단 둘이 남은 할아버지의 소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엄마와 연락 끊긴 아빠, 오늘도 할아버지는 기도합니다.

? sponsored by Daum 희망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특정업무경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2010년~2013년 동안 각 부처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2010-2013 특정업무경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	2010	2011	2012	2013	증감
감사원	3,049	3,496	3,605	3,926	▲
경찰청	424,704	435,989	440,042	443,381	▲
고용노동부	4,792	4,808	4,664	4,442	▼
공정거래위원회	438	463	691	1,032	▲
관세청	9,479	9,670	10,302	10,631	▲
교육과학기술부	153	170	89	63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0	0	61	62	△
국가보훈처	15	15	15	16	△
국가인권위원회	215	215	247	248	△
국무총리실	608	581	503	482	▽
국민권익위원회	294	381	393	395	△
국방부	7,705	7,928	11,046	10,802	▼
국세청	46,187	49,767	50,160	47,917	▼
국토해양부	224	224	210	250	△
국회	11,224	12,396	17,743	17,875	▲
금융위원회	106	106	106	108	△
기상청	17	17	18	19	△
기획재정부	858	858	1,009	1,030	△
농림수산식품부	1,794	1,775	1,601	1,650	△
농촌진흥청	20	28	30	34	△
대법원	17,456	17,657	18,063	18,170	▲
대통령실	5,539	5,494	5,814	5,730	▽
문화재청	22	22	22	22	—
문화체육관광부	54	55	80	8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7	117	119	120	△
방송통신위원회	212	212	257	258	△
방위사업청	94	94	96	90	▽
법무부	30,387	34,096	37,118	40,137	▲
법제처	9	9	9	10	△
병무청	19	19	39	67	△
보건복지부	256	42	42	44	△
산림청	332	350	352	340	▽
소방방재청	547	560	578	591	△
식품의약품안전청	245	270	278	283	△
여성가족부	45	224	223	224	△
외교통상부	14	14	14	15	△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11	33	△

조달청	1,001	1,028	1,071	1,085	△
중소기업청	19	19	21	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57	1,315	1,325	1,385	△
지식경제부	156	162	162	162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77	0	0	0	—
통계청	3,120	3,120	3,098	3,049	▽
통일부	30	59	44	57	△
특임장관실	342	342	342	313	▽
특허청	82	84	85	99	△
해양경찰청	29,045	32,123	33,372	33,613	▲
행정안전부	743	855	914	84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	10	14	12	▽
헌법재판소	1,040	1,040	1,065	1,082	△
환경부	140	133	144	139	▽

△ : 1억원 이하 증가 / ▲ : 1억원 이상 증가 / ▽ : 1억원 이하 감소 / ▼ : 1억원 이상 감소

2013년 배정된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총 6524억 4500만원입니다. 이중 전체 특정업무경비의 68%에 해당하는 4433억 8100만원이 경찰청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순입니다.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전체 51개 기관 중 작년인 2012년에 비해 특정업무경비가 늘어난 곳은 35곳입니다. 이 중에서 1억 원 이상 증가한 곳은 8곳으로 경찰청이 33억여원 증가 했고, 법무부가 30억여원, 해양경찰청이 2억4천여만원, 대법원이 1억여원, 국회가 1억3천여만원, 관세청이 3억2천여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4천여만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 27개기관 역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6000만원 사이에서 각각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반면에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대로인 곳은 16곳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이 22억4천여만원을 줄여 가장 많은 감소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국방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2억4천여만원, 2억 2천여만원을 줄였습니다. 이 외에 대통령실과 통계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산림청, 특임장관실, 환경부, 방위사업청, 교육과학기술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각기 200만원~8400만원 정도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줄였습니다. 지식경제부와 문화재청은 동결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EBS

이동흡 후보의 사건 이후 기획재정부는 특정업무경비의 선(先)지급을 금지하고, 한달에 30만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유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30만원 이하의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사적으로 유용될 소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용액에 대해 영수증으로 남기고 기록하는 등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특정업무경비는 언제고 눈먼 세금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회수 0	
3	불편한 대응량 설유 유연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9	'부른거탑'식 군대 이야기에 열광하는 0 부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중앙정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망진창 의원외교활동,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0)
2013/02/15
- 탈 많은 특정업무경비. 올해 예산 늘린 기관은 어디? (0)
2013/02/12
- 인수위 정보공개 통지!! 불통모습 여전히. (0)
2013/02/06

증 제5호 해당 언론기사



<정부 부처 87% '특정업무경비' 현금으로 지급>

증빙없이 '쌈짓돈' 변질...감사원도 지침 위반

연합뉴스 | 입력 2013.01.24 11:23 | 수정 2013.01.24 16:52

댓글 172 | [더보기](#) | [신고](#) | [인기](#)

증빙없이 '쌈짓돈' 변질...감사원도 지침 위반

(세종=연합뉴스) 김준익 박수윤 기자 = 이동훈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특정업무경비의 부적절한 사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정업무경비가 공무원의 '쌈짓돈'으로 쓰이지 않았는지 감시해야 할 감사원도 지침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적받은 적이 있을 정도다.

◇특정업무경비 증빙서류 없이 사용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공무원이 받는 경비 가운데 하나로 증빙서류가 없어도 월 30만원씩 쓸 수 있어 용돈 성격이 강하다.



참, 오후 '立春'에 춘절맞아 피산군, 스타 대원마르 금대십 "가 '전세금지 경찰에 총 개중간 치 '주택청약 '꽃 언론' 여성 접대 남자들 북

국민연금 중부 최 제2롯데 로또 당 용뉴캠터 원도우8 외국인



13. 2. 4.

<정부 부처 87% '특정업무경비' 현금으로 지급> | Daum 미디어다음



특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드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다. 2011년부터 조사도 대상업무에 포함되면서 액수가 늘었다.

올해 예산안을 보면 특경비는 50개 기관에 6천524억원이 편성됐다. 특경비는 2008년에는 5천677억원에 그쳤지만 2009년 5천874억원, 2010년 6천58억원, 2011년 6천30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은 특경비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이번 이동흡 현재 소장 후보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예산집행지침은 특경비를 편성된 범위 내 집행해야 하며 특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집행계획 작성기준 범위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집행투명성을 높이고자 특경비는 편성된 경비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의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특정 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해 소요되는 경상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30만원까지 매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면 사용내역 증빙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특성에 따라 특경비를 지급한 부처의 절반 정도는 전액을 정액으로 지급했으며 이는 전체 특경비의 8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부처 대부분이 특경비가 현금 형태로 지출돼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특경비와 비슷한 성격의 경비로는 특수활동비가 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와 사건수사, 이와 유사한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예산안 기준으로 작년보다 1.3% 늘어난 8천553억원이다.

'바빠서 어
요



[화보] 비문
인 슈퍼볼



오늘 새벽
전주 살인
초법적 일



아기 티
길 선물
지나가 부

한·중 6자
새정부 출
킨 대변인
안철수 "대
"문재인"

박근혜 등
차 지적 'MB'차
조국 교수
이재오·유

출퇴근

<안철수

13. 2. 4. <정부 부처 87% '특정업무경비' 현금으로 지급> | Daum 미디어다음

주로 정보활동 수행자의 교통비나 식비, 숙박비, 정보제공자 사례금, 기타 국가기밀 보안 유지와 사업내용이 노출되면 정책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업무에 편성된다.

특수활동비는 특경비와 달리 집행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매년 국회 예산과 결산 심의에서 투명성 논란을 빚었다.

특경비와 특수활동비처럼 지급대상 업무가 제한된 경비 외에 공무원에게 주는 경비로는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경비가 있다.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경비는 모든 기관이 받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각각 2천억원, 1천260억원이다.

◇부적절한 특경비 사용, 뿌리 깊은 관행

사실 특경비가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해 산하 기관까지 나랏돈을 쉽게 생각해온 사례는 뿌리깊다.

특경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보면 예산 외 목적으로 특경비를 유용하는 경우로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에도 특경비를 유용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현재에는 기본경비 5억3천200만원, 헌법재판 운영지원경비로 5억800만원 등 총 10억4천만원이 특경비로 배정됐다. 그러나 현재는 운영지원경비의 일부를 '선물 구입비'로 집행했다.

재판 운영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라고 재판관·헌법연구관·일반공무원에게 지급한 돈이 쌈짓돈으로 변질한 셈이다.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세종시 이전으로 출장조사가 늘어난다며 특경비를 전년보다 49.4%(3억4천100만원) 늘린 10억3천100만원 편성했다. 기업 불공정행위의 직권조사 강화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1억원도 신설했다.

국회는 특수활동비가 기존 특정업무경비와 중복된다고 판단, 1억원을 4천900만원으로 깎았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미국의 정보 데이터베이스(DB) 업체인 '렉시스넥시스' 등 유료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특경비 36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배정했다.

이에 예정처는 유료사이트 이용을 특경비로 편성할 실익이 없어 일반 수용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치안활동비로 지급하는 월 17만원을 특경비로 처리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시작도 존
제실작업
국정원
제주 먹이
"물 출생"
또 담 출생
재벌가 딸
양심적
'아반떼스'

재벌가
'오피스
전주 일
제주 먹
제실작업

사회 대형
정치 <과;
경제 "물·
생활 대설
국제 하버
연애 김태

G마켓 11번
신세계를 찾



누빔-OPS-
주문폭주!



명품스타일
미시웃1위

13. 2. 4.

<정부 부처 87% '특정업무경비' 현금으로 지급> | Daum 미디어다음

치안활동비가 직무 특수성에 따라 주는 부가급여의 성격이 강한 만큼 공무원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 행정안전부는 2010년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위원장에게 매월 80만원씩 특경비를 지급했다. 농림수산물부는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원들에게 매달 46만2천원~55만5천원의 특경비를 줬다.

특경비 지급액이 매달 30만원인 상한선을 초과하는 예도 있었다.

감사원은 2012년 예산안 편성에서 기재부 지침과 다르게 감사위원 6명에게 매달 50만원씩 특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회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

감사위원은 차관급으로 정무직에 해당해 특경비를 정무직에게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는 지침에도 어긋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정업무 수행과 관련해 지급 소요가 발생할 때만 특경비를 지급하고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에 권고했다.

특경비의 월정액 지급비목이 부적절한 사례로는 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기금의 '기타경비 사업 내 총계량인건비목인 직무수행경비' 사업에서 외국 근무직원 28명에게 1년간 17억 2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거론됐다. 공사는 지적을 받고 2012년부터 인건비로 통합했다. 특정업무의 범위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의 예산지침이 특경비의 지급 대상 업무를 수사·감사·예산 '등'으로 제시해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부처는 수사·감사·예산 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특경비를 지급한다.

2010년 특허청은 비상계획 수립업무를 담당하는 비상계획관에게 매월 7만원을 제공했다.

같은 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에게 각각 매달 15만원을 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자문 파견검사 2명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했다. 공정위는 대변인에게 매월 30만원을 줬다.

justdust@yna.co.kr

clap@yna.co.kr

연합뉴스 관련기사 |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인준 힘들듯(2보)

새누리, '이동흡 자진사퇴' 가닥잡나

민주 "이동흡 고발검토"..압박 강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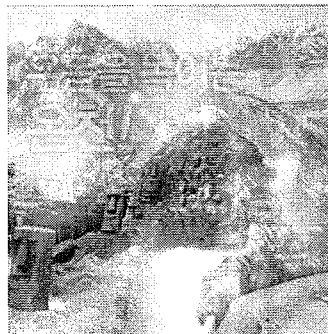
국회 상임위원장들, 특정업무경비 받는지 여부도 몰라

50개 기관 허술한 관리... 용돈처럼 쓰고 증빙엔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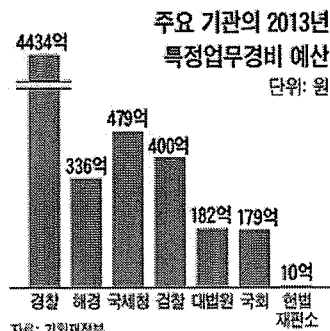
조선일보 | 박유연 기자 | 입력 2013.01.24 03:12 | 수정 2013.01.24 10:57

원문 1 | 미디어룸 | 키워드 | 태그 보기

올해 정부 50개 기관에 6524억원이 책정된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회계·계약·세무·대민·소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필요에 쓰라고 주는 돈이다. 용도가 정해져 있고, 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증빙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얘기다. 급여 보조나 용돈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대법원 등이 특히 문제



1 [조선일보]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문제 되는 곳은 대법원, 현재, 감사원, 국회 등이라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들의 얘기다.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감사·감찰도 엄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관은 헌법재판관과 액수가 비슷한 특정업무경비를 '사법행정활동비' 형태로 지급받는다. 대법원예산 영수증 등 증빙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 얼마 전부터 일부는 현금, 일부는 카드로 지급한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전·현직 대법관 중에도 이동훈 후보자와 비슷하게 개인

차, 오후 '立春'에
윤철맞아
괴산군, 스
대형마트
금태섭 "2
'전세금지
경찰에 총
개출간 처
'주택청약
'꽃 언론
여성 집대
남자들 북

제2롯데
전세금지
트랙스 :
금태섭
윤뉴캡E
한컴 팬
퇴직연금



13.2.4. 국회 상임위원장들, 특정업무경비 받는지 여부도 몰라 | Daum 미디어다음

계좌에 넣고 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대법원에는 특정업무경비가 182억원 배정됐다.

감사위원들의 경우도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감사위원이나 국장들이 특정업무경비를 쓰기는 하지만 특정업무경비용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며 "개인 계좌에 넣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엔 179억원 배정

국회에 배정된 올해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이다. 국회 사무처 측은 특정업무경비 배분 및 사용 실태 내역은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의 특정업무경비는 의원 개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국회의장·부의장 및 상임위별로 지급한다고 한다.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여러 세목(細目)으로 쪼개 지급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특정업무경비'라는 이름 자체를 모를 수 있다"고 했다. 엄격한 증빙을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들은 특정업무경비라는 이름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이 상임위 비용을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한 상임위원장은 "특정업무경비"라는 이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임위 활동에 쓰라고 지급되는 게 월 500만~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개인적인 용도로 쓰다거나 투자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상임위원장은 "유류비 등 다른 보조금이 한꺼번에 '경비 통장'에 입금돼서 거기서 빠져나간다"고 했다.

◇행정 부처는 고위직에 안 줘

일선 부처의 경우는 주로 실무자급들에게 특경비를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434억원을 배정받은 경찰은 경정급 이하 경찰 10만1000여명에게 보직에 따라 매달 17만~47만원씩 특경비를 준다. 하지만 월 30만원까지는 증빙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급여 보조 성격이 강하다. 국세청도 조사 담당 직원들에게 개인 특정업무경비를 월 24만원 주고, 별도로 각 세무서의 '정보 수집 전담반'에 '정보 업무 카드'를 준다.

검찰도 각 지검 부장급 이하에게 특경비를 주고 있으며, 압수수색 등 단체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쓴다고 했다. 일선 지검의 부별로 매월 200만원가량이라고 한다. 한 부장급 검사사는 "받고 있는 돈이 특경비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며 "대부분 부 운영비로 쓴다"고 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선일보 관련기사 |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새누리 "이동홍 자진사퇴해야" 기류 확산

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124031205588

안현수, 라이곤 환싱즈



'바빠서 아요



오늘 새벽 전주 살인 초법적 음



아기 티 길 선을 지나가 투

한·중 6차 새정부 출범 대변인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등 '박 지적' MB·박측 조국 교수 이재오·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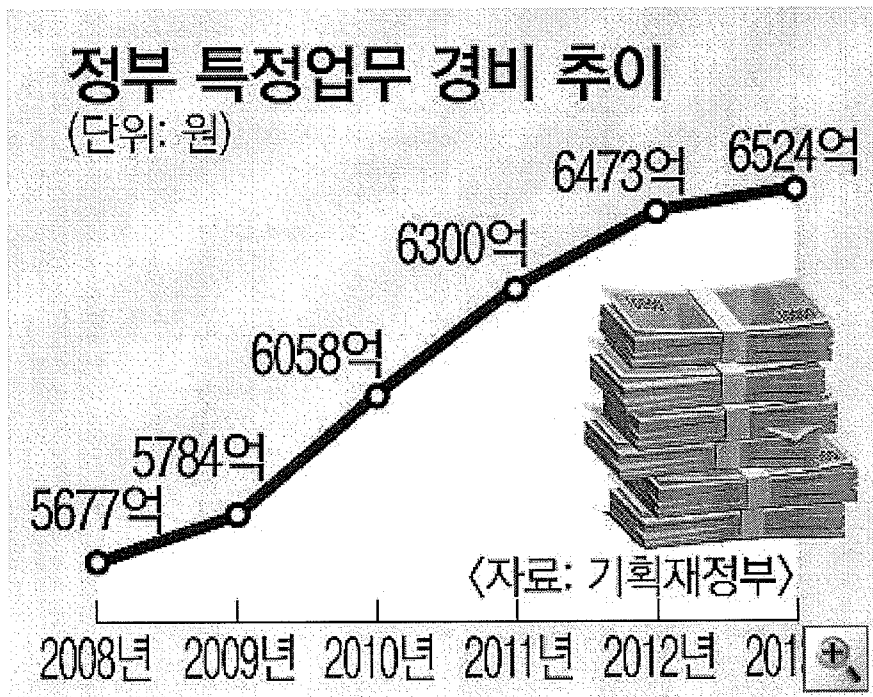
출퇴근

<안철수

[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특경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 전용... 경조사비에 주점서도 사용

정부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경비 논란이 증폭되자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24일 특경비 규모와 사용 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경비를 쓰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경비는 검·경 등 정부기관의 수사, 감사, 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예산이다. 조직 규모나 인원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출에 따른 증빙도 필요 없다. 개인이 3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고 먼저 지출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나중에 보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책정된 특경비 예산은 50개 기관 6524억원이다. 특경비가 많은 기관은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등이다.

특경비 사용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검찰과 경찰은 물론 대법원 관계자들마저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특경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취지와 달리 대부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고 업무추진비 카드(클린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주점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비용이나 내부 행사에는 법인카드를 쓰지만 그 돈이 업무추진비라고만 알고 있지, 특경비라는 개념이 있는지는 몰랐다"며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은 공적인 업무로 발생하는 비용은 부서별 카드를 쓰거나 사비로 쓴 뒤 영수증을 통해 청구할 뿐 업무추진비와 특경비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예산 업무까지 맡는 다른 외청과 달리 검찰청은 상급 부처인 법무부에 예산 기능이 있어 특경비 사용 실태를 알 수 없다"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은 공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2008년 감사원의 특경비 부당 사용 적발 이후 정기적으로 특경비 사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경비 자체를 모르는 판사도 많고 일부는 특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금지된 경조사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특경비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경비는 증빙 자료를 내게 돼 있지만 특경비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행정 편의상 사전에 지급되다 보니 100% 완전한 증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2007년도 예산 집행 감사에서 38억 7000만원의 특경비를 직책별 업무추진비 등으로 잘못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회가 두 차례나 특경비의 부정 사용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국회 비판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던 특경비를 사용처가 명확히 드러나는 법인카드에 입금해 지급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특경비는 크게 '치안 활동비'와 '기능별 활동비'로 나뉜다. 치안활동비는 경정급 이하 경찰 10만 1000여명 모두에게 매달 지급되며 금액은 17만원이다. 기능별 활동비는 수사나 방법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들에게 업무별 특성에 따라 5만~30만원씩 차등 지급한다. 총경 이상 간부들은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별 활동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경비의 주 사용처가 수사 활동 시 지출되는 교통비나 식비 등인 경우가 많은데 건당 금액이 5000원 등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다"면서 "재정부에서도 30만원 한도 내에서는 경상경비 차원에서 재량껏 지급하라고 지침을 정해 놓아 일일이 사용처를 제출받진 않는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 후보자로 인해 불거진 공무원 특경비 논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고위급 일부의 문제가 마치 전 공무원의 문제인 양 비치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정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경찰관은 “정보, 수사, 외사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활동 영역이 넓어서 최대 47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는다 해도 모자라 개인 비용을 쓰고 개인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중앙 부처 관계자는 “기관마다 사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직사회에서 특경비 부당 사용은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라면서 “영수증만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점 등에서 특경비를 사용한 뒤 일반 식당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한다”고 사용 실태를 전했다.

한편 재정부부는 이달 안에 2013 예산·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중앙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처들은 이 지침에 따라 특경비 집행 계획을 재정부에 내야 한다. 방문규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기관별 특경비에 대해 연 3차례 실태 점검을 하지만 현재의 경우 헌법기관이라는 특성상 점검이 심도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특경비 점검을 강화해 불미스러운 일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 기사일자 : 2013-01-25 |

증 제6호 2012. 8.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2011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중 해당 부분

가. 현황

- 특임장관실은 특임활동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47억 3,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44억 1,900만원을 집행. 이 중 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정업무경비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3억 700만원을 집행

〈특임활동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2011								2012 예산액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특임활동	4,739	0	0	4,739	4,419	0	320	93.2	4,869
(특정업무경비)	(337)	(0)	(0)	(337)	(307)	(0)	(30)	(91.1)	(337)

자료: 특임장관실

나. 문제점

- 특정업무경비 지급방식의 구분기준 모호
 - 정무직(2명)과 기능직(6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월정액과 실지급액으로 나누어 매월 특정업무경비 지급
 - 상시 조사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특정현안 조사에 대해서는 실지급액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그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현안 조사업무가 상시 조사업무에 포함될 여지 존재
- 실지급의 경우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특정업무경비(250-03목)로 집행
 - 이로 인해 여비(220목) 등 다른 예산과목과 혼동되어 집행될 우려

다. 개선방안

- 월정액 지급과 실지급액 지급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고 다른 예산과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현행 지급방식을 개선할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pp. 30~32.

[담 당] 김애선 예산분석관(788-4640)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의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연례적 불용

가. 현황

-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은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예산액 16억 9,400만원 중 전용 2,9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16억 6,500만원 중 16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2011								2012 예산액
	예산액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사업	1,694	0	-29	1,665	1,646	0	19	98.9	1,801

자료: 법무부

나. 문제점

- 연례적으로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를 과다 편성하여 예산 불용
 - 최근 3년(2009~2011년)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 집행실적을 보면 2009년 5,700만원, 2010년 6,200만원이 불용되었고, 2011년 전용 2,900만원을 제외하고도 1,200만원이 불용되어 연례적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

다. 개선방안

-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이 발생한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공익법무관 특정업무경비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1」, pp. 65~68.

[담 당] 주성훈 예산분석관(788-4642)

가. 현황

- 감사원기본경비사업은 감사원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예산액 100억 2,4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7,1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100억 9,500만원 중 97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8,500만원을 불용

〈기본경비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2011								2012 예산액
	예산액	이월액	이전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기본경비	10,024	71	0	10,095	9,710	0	385	96.2	10,552

자료: 감사원

나. 문제점

- 감사위원 특정업무경비 월정액 지급은 집행지침 위반
- 감사원은 정무직인 감사위원 6인에 대해 매월 50만원씩 특정업무경비로 심의활동비를 3,600만원(=6인*12월*50만원) 지급하여 집행지침 위반
 - 집행지침은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정무직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고, 특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다. 개선방안

- 감사위원 특정업무경비는 지급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지급할 필요
- 감사원은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감사위원 특정업무경비를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pp.100~102.

[답 당] 주성훈 예산분석관(788-4642)

가. 현황

- 헌법재판소는 2011년도 특정업무경비로 기본경비사업 5억 3,200만원, 재판활동운영경비사업 5억 800만원 총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

〈헌법재판소 특정업무경비 결산: 2008~2011년〉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예산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기본경비	526	561	526	552	532	532	532	532	557
재판활동 운영경비	308	272	308	281	508	508	508	508	508
합 계	834	834	834	834	1,040	1,040	1,040	1,040	1,065

자료: 헌법재판소(2012)

나. 문제점

- 특정분야 소관 업무와 무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연구기관으로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와 공무원 및 법조인 등에 대한 헌법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조직으로 연구기관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
 - 헌법재판연구원은 1부(연구교수부), 5과팀(기획행정과,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국제조사연구팀, 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더라도 전체 인원에 대해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특정 분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 경비를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지급요건과 맞지 아니함

다. 개선방안

- 헌법재판연구원 특정업무경비 조정 필요
- 헌법재판소가 연구조직인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직원에 대해 특정 분야 소관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정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pp. 111~114.

[답 당] 주성훈 예산분석관(788-4642)

가. 현황

- 2011년 국세청은 조사반 활동비로 384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361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9,1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집행률은 94.0%를 보이고 있음
 - 특정업무경비는 2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억 8,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6%이고 14억 1,200만원은 불용
 - 조사반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 중 역외탈세대응 관련 특정업무경비는 36억원이며, 22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 3,600만원이 불용

〈2011년 조사반 활동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2012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조사반 활동비	38,466	-	-	38,466	36,175	-	2,291	94.1	1,934
(특정업무경비)	(22,000)	(-)	(-)	(22,000)	(20,588)	(-)	(1,412)	(93.6)	(-)

주: 2012년부터 조사반 활동비의 특정업무경비는 부과·징수자료비로 통합 편성

자료: 국세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자료」(2012)

나. 문제점

- 비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 및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 특정업무경비를 이용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으며, 화상회의 시스템 개발이 불가피했다면 연구개발비로 비목변경을 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현금성 경비를 이용하여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향후 유지·보수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다. 개선방안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비목을 구분한 취지를 준수하고,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 pp. 105~108.

[담 당] 연훈수 예산분석관(788-4625)

가. 현황

- 소방방재청은 소방보조인력소방훈련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특정업무경비를 계상하고 있음. 2011년도 특정업무경비 예산현액은 5억 6,000만원으로 5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0만원은 불용

〈소방방재청 특정업무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

	2011							2012 예산액
	당초 예산액	이전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소방보조인력소방훈련	2	0	2	2	0	0	100	2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총액)	4	0	4	4	0	0	100	4
프로그램재정운영관리(총액)	12	0	12	12	0	0	100	12
소방정책국기본경비(총액)	137	0	137	135	2	0	98.5	137
중앙소방학교기본경비(총액)	102	0	102	101	0	1	99.0	102
중앙119구조대기본경비(총액)	303	0	303	291	12	0	96.0	321
합 계	560	0	560	546	14	1	97.5	578

자료: 소방방재청(2012)

나. 문제점

□ 부적정한 집행

- 특정업무경비를 특정 부서·직렬·직급의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 지급 대상 등 타당성 검토 필요

- 특정업무경비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 검토할 필요

[참 조]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I」, pp. 433-435.

[담 당] 심성택 예산분석관(788-4641)

제7호 증 2008. 9. 22. 국민권익위 재결례



특정업무 경비 부담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민형사법업무

분과번호 제2008-149호 의결일자 20080922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장, 피신고자 B는 예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특정업무경비에산을 예산편성 목적과 등 업무추진비 용도 등으로 집행하고, 월정액 지급기준(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구체적인 사용증빙을 갖지 못한 채 예산을 손실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특정업무경비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여서는 안되며, 특정업무경비를 직책별 업무추진비 연구지원비 등 당초 편성목적과 다르게 업무추진비 용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공공기관에 재산손실을 가한 부패 혐의 조사 필요

의결결과

○○기관으로 이첩